

장기 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입소정원 : 24인
2. 입소대상 :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2)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3)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아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 (4) 기타 관계 당국의 정원 외 수용 지시에는 예외로 한다.
3.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파킨슨, 뇌경색 등 노인성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가진 자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 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시설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2) 입소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4. 계약기간의 만료

- (1)계약만료시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

스가 종료된다.

(2) 제 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5.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 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는다.

6.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8.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4)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 (5)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

시설의 입소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 입소이용료 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기타비용 -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 항목	금 액 (원)	내 역
식비	1일 / 11,100원	1식 3,700
간식비	1일 / 1,000원	일 1회
상급침실료	1인실/ 1일 10,000	2인실/ 1일 5,000
이미용비	무 료	-

〔 계약의 해제 〕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1)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3) 시설 내에서 시설 규칙이나 시설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 (5)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6)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 (7)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8) 장기 부재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 2) 입소자의 계약해제
 -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해지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등 비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 (1)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 (2)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 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2. 급여비용 변경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장기요양등급 변경이 확인된 경우 등급에 따른 급여비용을 적용한다.
 - (2) 본인부담금 감경이 확인된 경우 감경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적용한다.
 - (3)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적용한다.
 - (4)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일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용료 납부방법은 급여비용 안내문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카드결제로 결제하며, 이용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동이체는 어려움을 통지한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급여제공 - 수급자를 장기간 보호하면서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등을 반영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한다.
 - (1) 수급자의 기호, 건강상태등을 고려하여 하루에 3회 이상 영양, 규칙적인 식사를 제공한다.
 - (2) 수급자가 청결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매일 배변관리 및 구강청결 등 위생관리를 제공한다.
 - (3) 주 1회 이상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 (4) 수급자의 신체적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이동지원 및 체위변경 등을 제공한다.
 - (5) 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관련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한다.
 - (6)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심신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인지기능 프로그램 및 여가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서비스, 여가선용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 (본인부담금,비급여) 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